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분야 70개 규제합리화 과제 선정

보건복지부는 1996. 11. 12일 이기호차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10. 23일 실무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상정한 보건복지부 소관 규제관련법령 중 합리화 대상으로 선정된 70개 법령에 대하여 과제 선정의 적정성 여부, 합리화 추진내용의 적합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이를 최종 확정하였다. 금번 합리화 대상으로 채택된 70개 중 특히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련산업체의 규제완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는 11개 법령에 대한 목록 및 세부설명은 별첨과 같다.

□ 사회분과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허가 완화(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개정): 현행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설치가 가능하였음. 이를 이번 제도개혁에서 시설설치 운영주체를 종교단체, 기업 등에게까지 확대하고 30인 미만 규모의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설립이 자유로와 질 것으로 기대됨.
-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용 자산소유 의무 폐지(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연간 운영경비의 20/100이상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 운영상 재정력 강화에

기여하는 장점은 있으나 '84년도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90% 이상은 현실적으로 20% 자부담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현재 시설 연간운영비의 95~100%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의 수익사업용 기본 재산 소유 의무를 폐지하면 재산규모가 다소 부족한 사람들의 사회복지법인 참여도 활성화될 것임.

□ 가정분과

-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 제도개선(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9조 개정):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료노인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생활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이를 생활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은 폐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신청만 하면 시·군·구에서 입소 대상자 여부를 내부 확인토록 개선함으로써 입소절차가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됨. 이는 국민의 편의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한 것임.
- 보육사업의 수강료 승인제도 개선(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9조 개정): 현행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은 보육사업의 수강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강료를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은 폐지함으로써 보다 자율화시키고자 함.

□ 보건분과

- 입항시 선박의 입항통지 의무개선(검역업무지침개정): 현재 대리인이 직접 검역소를 방문, 관련서류를 제출해 왔으나 앞으로는 유선 또는 FAX를 통해 통보 가능토록 완화할 예정임.

□ 식품정책분과

- 수입식품 등의 검사기간 단축(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개정): 수입식품 등 검사기간이 서류검사 5일, 관능검사 7일, 정밀검사 25일로 규정되어 있어 검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보세장치의 체화료 증가로 민원야기 및 통상마찰이 발생하였으므로 서류검사 3일, 관능검사 5일, 정밀검사 18일로 단축하고, 수입자가 유통판매 전에 부패과실을 선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의정분과

- 고가특수 의료장비 설치승인 완화(고가특수의료장비 설치승인 심사대상품목 지정고시 개정): 50만불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고가의료장비 사전설치 승인 대상 중 CT, MRI 장비를 제외함.
- 의료법인 설립허가 개선(의료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개정): 그 동안 사업의 범위가 2개 시·도에 걸친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관리과에서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이를 시·도지사에게 이관할 계획임.

□ 약정분과

- 향정신성 의약품 품목원료 사용승인 개선(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는 사용할 때마다 승인을 받고 있으나(평균 7일 소요), 이를 사용할 때마다 보고로 전환하여 완화할 계획임.

□ 연금보험분과

- 직원 징계의결 결과보고 폐지(직장조합운영규정 제109조, 지역조합 운영규정 제96조): 현행 의료보험조합은 직원의 징계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의료보험제도의 정착과 자율성 신장으로 불필요한 제도임. 이를 이번 제도개혁에서 폐지하고자 함.
-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진료승인 폐지(의료보호법시행령 제13조제2항): 의료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보호 환자가 타진료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이는 의료보험과 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므로 이번 제도개혁에서 폐지하고자 함.

한의학 전담조직 「한방정책관」 설치

- 정부는 기 발표한 「5. 16 한의약관련 종합대책」과 「8. 30 한의학 육성·발전계획」에 따

라, 한의약관련 전담기구로서 보건복지부 차관 밑에 「한방정책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직제령 (대통령령) 개정안을 11. 8. (금) 관계부처에 협의 요청하였음.

- 「한방정책관」의 신설은 한의약을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한방정책관」은 국장급(2·3급)으로 하고, 한방정책관실에 ‘한방의료담당관’ 및 ‘한약진흥담당관’을 두며 총정원 19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음.
- 「한방정책관」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음.
 - － 한의약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 － 한의약의 연구개발 지원
 - － 한방의료인력 및 의료기관의 육성·지도
 - － 한약의 규격 제정 및 한약처방의 표준화
 - － 한약의 수급·유통·품질관리 등임.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한방정책관」 설치를 계기로 한의약의 획기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의학연구소를 한방임상센터를 포함한 「한의학연구원」으로 확대 개편(관련법률개정)하고, 본격적인 한방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97년도에 5개 한의과대학에 3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임.
- 또한, 한방의 세계화를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임.

질환별 전문치료기관 설치 추진

- 보건복지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응급환자 증상 중의 하나인 중증외상, 화상, 심혈관질환 등의 질환치료 수요에 대응하여 서울 및 포항 등 대규모 공단지역에 총 8개의 전문치료기관을 설치키로 하겠다고 11월 5일 밝힘.
-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질환별전문치료기관 설치지침을 보면, 외상센터는 서울, 포항, 울산, 광양, 목포, 마산·창원지역에 각 1개소씩 6개소를 설치하고 화상센터, 심혈관센터는 서울시에 각각 1개소씩을 설치하며, 해당 시·도지사가 관내 적정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추천하고 보건복지부의 설계검토 등 추천 의료기관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하며, 사업추진이 확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특자금에서 병원당 50

역 범위내에서 용자지원키로 함.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질환별 전문치료기관은 중증외상, 화상, 심혈관질환자의 전문, 최종진료기관으로 그 역할을 정립하며, 동 질환에 대한 연구, 교육기능 수행 등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음.
-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빠르면 오는 12월경부터 시·도지사의 추천병원에 대해 사업계획 검토가 완료되는대로 사업대상병원을 확정하고 '98년부터는 병원별로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힘.

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호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의료보호환자와 의료보호진료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의료보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11월 4일부로 입법예고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97년부터 의료보호기간을 270일로 하여 30일간 연장(안 제12조의 2)
 - 현재 240일로 제한되어 있는 의료보호기간을 '97년부터는 270일로 30일 연장하여 의료보호환자의 진료혜택을 확대함.
- 타진료지구에서의 진료절차 간소화(안 제13조)
 - 의료보호환자가 다른 진료지구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담당의사의 진료소견서와 관찰 시장·군수·구청장의 진료승인이 있어야 가능했으나, 의료보험과 동일하게 담당의사의 진료의뢰서만으로 타 진료지구에서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의 진료승인절차를 폐지(안 제13조)함.
- 진료비 청구·지급절차 간소화 등(안 제17조제1항)
 - 진료비 청구절차가 각 시·군·구청과 의료보험연합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의료보호진료비 심사수탁기관인 의료보험연합회에 청구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간소화하여 의료보호진료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고,
 - 의료보호비용의 지급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통일하여 진료비지급상 혼선을 방지함.